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67호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 기간('22년~'24년)이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른 위탁 기간 변경 고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제5조)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을 2022년에서 2025년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탁기간)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2022년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한다.	제5조(위탁기간)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2025년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한다.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전자우편 : lsh6950@korea.kr
- 팩스 : 044-868-2306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21, 팩스 044-868-2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일부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1조~제4조 기재 생략</p> <p>제5조(위탁기간)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u>2022년</u>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한다.</p>	<p>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탁기간)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u>2025년</u>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한다.</p>	<p>○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 기간('22년~'24년)이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 고시 개정</p>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제정 2015.10.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50호

개정 2018.5.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33호

개정 2018.12.2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8호

개정 2022.1.14.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1호

개정 2025.1.0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이하 "공급물량 배정업무"라 한다)를 위탁 받는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 및 처리방법) ① 수탁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공급물량 배정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공급물량 요청
2.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월별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
3.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 추천에 관한 사무
4. 가공용쌀 소비능력 확인에 관한 사무

5.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배정물량 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무
6. 가공용쌀 수급현황에 대한 전산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무
7. 별지 서식에 따른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② 공급물량 배정업무 처리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 그 밖에 공급물량 배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수수료) 공급물량 배정업무에 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쌀가공업자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제5조(위탁기간) 공급물량 배정업무 위탁기간은 2025년을 포함하여 3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2025-00호, 25.2.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